

# — 생명 윤리의 — 핵심 — 쟁점들



구인회 마리아요셉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들어가는 말

필자는 할애된 지면을 통해 생명 윤리의 몇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생명 경시 현상이 팽배해 있다. 현대 생명과학 기술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 범위가 광범위하여 전 사회, 전 세계에 이르며,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을 지니기도 한다. 따라서 생명과학자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연구자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연구를 수행하는 데는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은 선한 데 있어야 할 것이며, 이 선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 역시 올바르고 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계 종사자들의 의료행위 역시 환자의 건강과 복지, 생명의 보호를 위한 선한 목적과 그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의 적절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배아 연구

불치병과 난치병 환자의 치료를 돕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배아복제줄기세포 연구는 배아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근본적인 윤리 문제를 안고 있다. 난자와 정자로 수정된 배아 이든, 체세포 핵이식을 통해 연구용으로 만들어낸 복제배아이든, 불임 시술 과정에서 남아 냉동 저장된 잔여 배아이든 모두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인간 존재

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환자들을 돕는다는 좋은 목적을 위해 연구한다지만, 생명을 조작하고 줄기 세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인간 생명체인 배아가 죽게 된다.

배아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조차 없는 작고 미미한 존재이지만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온전한 인간 개체로 될 인간 존재인 것이다. 지금 존재하는 우리는 모두 배아의 시기를 거쳤으며, 배아는 인간으로 되는데 거쳐야 하는 통로라고 할 수도 있다.

생명의 희생을 마다 않는 배아 연구가 질병 치료를 위해 실용화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동물 실험을 거쳐 안정성이 확보된 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실험을 통해 그 안전성과 효용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배아 연구와 달리 생명의 희생이 없이 가능한 성체 줄기세포 연구라는 대안이 있으며, 최근에는 난자나 배아를 사용하지 않고 체세포 역분화 기술을 이용해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다.

## 낙태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낙태에 관한 윤리적 문제를 검토해보자. 낙태를 쉽게 생각하는 것은 태아를 독립된 개체로 생각하지 않고 산모의 일부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아는 산모에 속하는 존재가 아니라, 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독립된 개체이다. 생존을 위해 모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태아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모체는 잠시나마 태아의 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러한 소유권은 임신부와 태아 쌍방에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낙태를 통해 임신의 부담을 쉽사리 제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생활고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린 자식들과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은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판단 때문이다.

미혼녀나 미성년의 임신인 경우에도 낙태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이제 막 생의 출발을 하는 청소년 시기에 생명을 말살하는 일, 낙태라는 쓰라린 체험을 막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미혼모도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잉태된 태아이든 그 생명은 우리 성숙한 인간의 생명과 다름없이 귀한 것이므로,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함을 인지해야 한다. 아이가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나 불행하게 자라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불행의 씨앗을 애초에 없애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낙태의 이유를 드는 것은 옳지 않다. 훗날 아이가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아이의 행복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낙태를 통해 살해당하는 것과 불행할지도 모르는 삶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가능성밖에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당사자인 아이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생각해보아야 한다. 아이는 결코 살해당하는 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낙태에 관한 고려는 아이에게는 생사의 문제이고, 임신부에게는 책임 회피 혹은 삶의 질의 유지가 주된 목적이다. 이 상황 역시 생명의 문제가 더 다급하고 우선적인 것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코 무고한 태아를 함부로 살해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며, 당장의 개인적 어려움을 감수하



더라도 태아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생명 존중의 사회가 바람직할 것이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고귀한 생명을 감사히 받아 성심껏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의무일 것이다.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의 존중과 보호에 혼신을 노력을 해야 함은 가톨릭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낙태 시술에 참여하거나 돕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 장기 이식

의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인해 병든 장기를 건강한 장기로 교체한 성공 사례를 비롯해 사랑과 희생의 장기 기증 미담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식 대기자에 비해 기증자는 크게 부족하며, 장기 밀매 사기단으로부터의 피해 사건들 또한 빈발하고 있다. 생존을 위해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용기는 사랑의 실천임에 틀림없다. 그러면 장기 이식에는 해결해야 할 어떠한 윤리적 문제점들이 있는가?

장기 기증은 고귀한 희생 정신에 의한 선행이지만, 기증자의 건강을 위협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식 절차에 상당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또 수혜자가 장기의 적출 및 이식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서민은 이식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수술 후 면역 억제제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비용도 문제이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는 장기 기증의 전 과정에서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 장기 이식의 절차, 방법, 예상되는 이익과 위험, 장기 이식 후의 치료 계획, 문제 발생 시 해결 대책,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이 제공되어야 하고,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 철저한 숙고 후 장기 기증이나 이식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진 외국에서는 미성년자의 생체 기증이 불가능하나 우리나라는 본인과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장기와 골수,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골수 적출이 가능하다. 비록 본인의 동의도 있어야 적출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자신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부모의 의견에 따르기 쉽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자발적 기증이 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친족이나 가족 간의 생체 기증도 심적 압박으로 인한 결정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수혜자는 기증자에게 평생 동안 갚아도 모자랄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환자에게 장기를 기증할 생각이 없는 가족은 부담감이나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러한 감정은 화목해야 할 가족 관계를 깨뜨릴 위험을 안고 있다.

생체 기증은 기증자들에게 심각한 건강의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증을 위한 검진을 통해 문제가 있는지 미리 가려내야 하며, 건강의 위해가 클 때는 장기 기증을 해서는 안 된다. 생체 이식에서는 수혜자뿐만 아니라 기증자에게도 근본적인 치료와 수술 후의 후속 치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비로소 사랑의 장기 기증은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인간 존재는 모두 존엄성을 지니는 귀한 생명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데 있으며,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희생되거나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뇌사자 장기 적출

뇌사자 장기 적출은 뇌사자가 이미 죽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일이다. 뇌사자가 살아있는 것이라면, 장기 적출로 인한 뇌사자 사망은 곧 살인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단지 장기 기증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유족이 뇌사 판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뇌사 판정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만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장기 적출이 가능하다. 장기 기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뇌사자는 아직 살아있는 자로 보아 심폐 소생 장치를 제거할 수 없다. 그리고 뇌사자의 치료는 지속되어야 하며, 자연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치료 중단을 한 후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살인 행위를 의미하며 처벌 대상이 된다. 문제는 중환자실의 의료 장비는 부족하며, 응급 상황에 처한 중환자의 회복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이미 죽음에 들어서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한 뇌사자의 신체를 인위적으로 연명시키는 것은 부족한 의료 자원의 불합리한 사용으로 간주되며, 다른 환자들의 생명의 기회를 막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기증을 원하지 않는 뇌사자의 가족이 중환자실의 과중한 치료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기 기증을 결정하고 뇌사 판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처지라면 더욱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또한 본인이 생전에 기증 동의서를 낸 경우에도 가족이 기증 거부를 하면 장기 적출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본인의 동의가 아니라도 가족이 장기 기증 결정을 하고 뇌사 판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은 자율권을 침해하는 법이다. 또 인간의 사망이라는 하나의 일회적 사건을 장기 이식과 연관시킴으로써 순수성이 훼손되고 있다. 단지 장기 이식을 전제로 하여,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만 뇌사 판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뇌사자를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실용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맺는말

이상에서 배아 연구, 낙태, 장기 이식 등에서 발생하는 생명 윤리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교회가 지향하는 생명 존중의 사상은 건강한 사람이든, 병약하거나 결함이 있어 타인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든, 성숙한 인간이든 아직 태내에 있는 아기가든, 초기 단계의 인간인 배아이든,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든, 인간 존재는 모두 존엄성을 지니는 귀한 생명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데 있으며,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희생되거나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